

제 4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03월 28일 (목) 오전 10시

2. 장 소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산업로 263-29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件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件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件

-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김치환	1981.02.18	사내이사	특수관계인	이사회	해당사실없음	해당사실없음	해당사실없음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성명	주된 직업	주요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김치환	삼기·삼기이브이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영학 석사 모건스탠리 기업금융부 現 삼기·삼기이브이 대표이사	해당사항없음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件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0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계좌(명부)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13일

주식회사 삼기이브이 대표이사 김치환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직인생략)

(별첨)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件

현 행	변 경(안)	비 고
<p>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p> <p>1.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u>200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p> <p>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u>200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p> <p>③ 사채의 액면총액이 <u>200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p>	<p>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p> <p>1.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u>300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p> <p>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u>300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p> <p>③ 사채의 액면총액이 <u>300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p>	<p>한도소진에 따른 발행누계액 초기화 및 신규발행 한도 설정</p>
<p>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u>200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p> <p>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u>200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p> <p>③ 사채의 액면총액이 <u>200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p>	<p>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u>300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p> <p>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u>300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p> <p>③ 사채의 액면총액이 <u>300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p>	<p>한도소진에 따른 발행누계액 초기화 및 신규발행 한도 설정</p>
<p>제15조2 (교환사채의 발행)</p> <p>1.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p> <p>2. <신 설></p>	<p>제15조2 (교환사채의 발행)</p> <p>1.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p> <p>2.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p>	<p>내용 보완</p>
<p>제43조의1 (외부감사인의 선임)</p> <p>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u>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u> 외부감사인을</p>	<p>제43조의1 (외부감사인의 선임)</p> <p>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p>	<p>표준정관 인용에 따라 일부내용 수정</p>

<p>선정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제45조2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3.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제45조2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3.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 제13조2항에 따라 정한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과 다른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p>	<p>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제6조 제14조 1항 각호, 제15조 1항 각호에서 설정한 사채의 액면총액한도는 본 정관 시행일(2024년 3월 28일) 이전에 각호와 같은 방식으로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